

직제규정

| | | | |
|------------------------|---------------------|----------------------|----------------------|
| 제정 1983. 9. 1 규정 제 1호 | 1998. 8.23 규정 제271호 | 2006. 3.10 규정 제552호 | 2018.10. 1 규정 제943호 |
| 개정 1985. 4.29 규정 제 28호 | 1999. 3.15 규정 제279호 | 2007. 1.10 규정 제571호 | 2019. 4.16 규정 제956호 |
| 1985. 7.30 규정 제 29호 | 1999. 4.15 규정 제283호 | 2007.10. 1 규정 제593호 | 2019. 7. 1 규정 제977호 |
| 1985.11. 9 규정 제 34호 | 1999. 6.21 규정 제286호 | 2008. 1. 3 규정 제602호 | 2019. 9.20 규정 제992호 |
| 1985.12.11 규정 제 37호 | 2000. 6. 2 규정 제317호 | 2009. 1. 1 규정 제624호 | 2019.12.16 규정 제998호 |
| 1987. 1. 1 규정 제 50호 | 2000. 7.25 규정 제324호 | 2009. 8. 1 규정 제638호 | 2020. 4. 2 규정 제1004호 |
| 1988. 7. 1 규정 제 67호 | 2000.10. 5 규정 제331호 | 2009.11. 1 규정 제641호 | 2021. 4. 1 규정 제1026호 |
| 1988. 9. 1 규정 제 69호 | 2000.11.27 규정 제333호 | 2010. 3. 3 규정 제649호 | 2021. 7. 1 규정 제1038호 |
| 1990. 1.31 규정 제 76호 | 2000.12.19 규정 제337호 | 2010. 6. 1 규정 제653호 | 2021.12.31 규정 제1052호 |
| 1990. 2.21 규정 제 77호 | 2001. 3.15 규정 제340호 | 2011. 3. 1 규정 제664호 | 2022. 4.13 규정 제1067호 |
| 1991. 3. 7 규정 제104호 | 2001. 3.24 규정 제342호 | 2011. 7.18 규정 제679호 | 2023. 4.10 규정 제1084호 |
| 1991. 6.22 규정 제107호 | 2001. 4.12 규정 제344호 | 2011.12.14 규정 제684호 | |
| 1991. 9.20 규정 제115호 | 2001. 6.19 규정 제366호 | 2012. 4.10 규정 제691호 | |
| 1991.12.13 규정 제119호 | 2001. 9. 5 규정 제370호 | 2012.12.27 규정 제710호 | |
| 1992. 8. 4 규정 제126호 | 2001. 9. 6 규정 제371호 | 2013.12.17 규정 제726호 | |
| 1993. 5.26 규정 제132호 | 2001.10.16 규정 제375호 | 2014. 2.28 규정 제731호 | |
| 1993. 7. 3 규정 제136호 | 2002. 1. 8 규정 제382호 | 2014. 4. 1 규정 제740호 | |
| 1994. 1. 1 규정 제158호 | 2002. 4.23 규정 제385호 | 2014.10.30 규정 제754호 | |
| 1994. 1. 1 규정 제160호 | 2002. 7.29 규정 제402호 | 2014.12.26 규정 제757호 | |
| 1994. 6. 8 규정 제164호 | 2002.11.15 규정 제415호 | 2015. 3.31 규정 제773호 | |
| 1994.12. 2 규정 제178호 | 2002.12.31 규정 제419호 | 2015. 6.10 규정 제775호 | |
| 1995. 8.23 규정 제190호 | 2003. 3.18 규정 제423호 | 2015. 7.31 규정 제780호 | |
| 1996. 4. 1 규정 제198호 | 2003. 6.10 규정 제432호 | 2016. 3.11. 규정 제788호 | |
| 1996. 7.31 규정 제207호 | 2003. 8.13 규정 제434호 | 2016. 6.27. 규정 제798호 | |
| 1997. 1.15 규정 제225호 | 2003.10. 7 규정 제436호 | 2016. 7.12 규정 제801호 | |
| 1997. 5.28 규정 제232호 | 2004. 8.26 규정 제476호 | 2016. 8.10 규정 제829호 | |
| 1997. 7.26 규정 제241호 | 2004.11. 8 규정 제480호 | 2017. 4. 1 규정 제854호 | |
| 1997.10.21 규정 제258호 | 2005. 4.18 규정 제499호 | 2017. 4.26 규정 제859호 | |
| 1998. 1. 6 규정 제262호 | 2005. 8. 2 규정 제510호 | 2017. 7.25 규정 제911호 | |
| 1998. 2.23 규정 제267호 | 2005.10.21 규정 제512호 | 2018. 5.21 규정 제928호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직제에 관하여는 조례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제의 개편) 공단의 기구설치 및 직제의 개편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 한다. 다만, 처(실·원) 산하 기구의 설치 및 직제의 개폐는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07.10.1, 2009.11.1, 2011.3.1, 2013.12.17)

제2장 구성원

제4조(구성원) 공단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와 직원을 둔다.

제5조(이사장)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이사 등) 본부장은 상임이사 또는 1급 직원으로 보하며, 이사장을 보좌하여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2004.11.8, 2005.8.2, 2005.10.21, 2006.3.10>

1. 경영전략본부장은 기획조정실, 인사노무처, 총무처, 홍보실, 인재문화원, IT전략실 업무를 관장한다.
<본호신설 2005.10.21><개정 2006.3.10, 2007.10.1, 2008.1.3, 2009.8.1, 2009.11.1, 2011.3.1, 2013.12.17, 2014.12.26., 2018.10.1, 2019.4.16., 2019.12.16., 2020.4.2., 2023.4.10.>

2. 복지경제본부장은 상가운영처, 주모시설운영처,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업무를 관장한다. <'98.2.23, '99.3.15, 2001.6.23, 2002.7.29, 2003.3.18, 2004.11.8, 2005.4.18, 2005.10.21, 2007.10.1, 2008.1.3, 2009.1.1, 2009.11.1, 2011.3.1, 2013.12.17.> <기존 제3호를 제2호로 이동, 2016.6.27.>

3. 문화체육본부장은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둠경기장운영처, 서울어린이대공원, 청계천관리처, 업무를 관장한다.<'97.5.28, '99.3.15, 2001.10.16, 2002.7.29, 2003.10.7, 2004.11.8, 2005.4.18, 2005.10.21, 2007.10.1, 2011.3.1, 2011.12.14, 2013.12.17, 2015.7.31, 2016.3.11, 2016.6.27.> <기준 제2호를 제3호로 이동, 2016.6.27.>

4. 도로관리본부장은 도로관리처, 도로시설처, 도로기전처, 도로환경처, 교통정보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10.1, 2008.1.3, 2009.1.1, 2009.8.1, 2009.11.1, 2011.12.14, 2013.12.17, 2014.10.30., 2016.6.27., 2023.4.10.>

<본호신설 2005.10.21> <기준 제4호를 제3호로 이동, 2011.7.18>

5. 시설안전본부장은 공사감독1처, 공사감독2처, 공사감독3처, 공동구관리처, 상수도지원처 업무를 관장한다.
<2000.7.25, 2000.11.27, 2001.3.24, 2001.9.5, 2003.3.18, 2004.11.8, 2005.10.21, 2007.10.1, 2009.11.1, 2013.12.17, 2016.8.10.> <기준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11.7.18>

6. 교통사업본부장은 주차시설운영처, 교통시설운영처, 공공자전거운영처 업무를 관장한다.

<본호신설 2016.6.27.>(개정 2016.8.10.)

제7조 삭제 <2003.8.13>

제8조(감사)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실 업무를 관장한다.(2000.7.25)

제9조(직무대행) ① 이사장 유고시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본부장 중 상임이사 순위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2005.10.21>

② 감사 유고시에는 감사실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7.1.>

제10조(직원) ① 직원은 일반직으로 하며, 일반직 직원의 직군은 사무직, 기술직, 조사직, 실무직, 상수도직, 사회복지직, 시설관리직, 자전거관리직으로 구분한다. <'98.2.23, 2000.10.5, 2002.7.29, 2003.8.13, 2008.1.3, 2010.6.1, 2014.12.26, 2015.3.31, 2016.6.27, 2016.7.12, 2018.5.21, 2019.4.16., 2021.12.31.>

② 일반직 직원의 직급은 1급 내지 8급(7급(보) 포함)으로 구분하고, 직급별 직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99.3.15, '99.6.21, 2002.7.29, 2003.8.13, 2010.6.1, 2015.3.31, 2019.4.16.>

③ 사회복지직, 조사직, 상수도직, 시설관리직, 자전거관리직 직원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 또는 내규로 정한다.<신설 2002.7.29, 개정 2003.8.13, 2008.1.3, 2010.6.1, 2014.12.26, 2015.3.31, 2016.6.27, 2016.7.12, 2018.5.21, 2019.4.16.>

제11조(고문, 전문위원 등) 공단은 필요에 따라 고문,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12조(기구) ① 공단의 기구는 “별표1”과 같다.<'97.5.28, '98.2.23, '99.3.15, 2000.7.25, 2000.11.27, 2001.3.24, 2001.9.5, 2001.10.16, 2003.3.18, 2004.11.8, 2005.8, 2005.10.21, 2006.3.10, 2007.10.1, 2008.1.3, 2009.1.1, 2009.8.1, 2009.11.1, 2011.3.1, 2011.7.18, 2011.12.14, 2013.12.17, 2014.10.30, 2014.12.26, 2015.6.10, 2015.7.31>
② <삭제 2008.1.3>
③ <삭제 2011.3.1>
<'99.3.15, '04.11.8, '05.10.21, 2007.10.1>
④ <삭제 2003.8.13>

제13조(직위) 제12조의 처(실·원)장은 1급 내지 3급 직원으로, 팀장은 1급 내지 4급 직원으로 보한다. 단,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4. 8.26, 2004.11.8, 2005.8.2, 2005.10.21, 2007.1.10, 2007.10.1, 2008.1.3, 2009.11.1, 2011.3.1, 2013.12.17, 2015.3.31>

제14조(정원) ① 공단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다만, 3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는 총수의 범위 내에서 내규로 정한다.

<2003.8.13, 2011.7.18, 2011.12.14, 2012.4.10, 2012.12.27, 2013.12.17, 2014.2.28, 2014.10.30, 2015.3.31, 2015.7.31>
② 삭제<2019.4.16.>

제15조(직무분장) 제12조의 기구별 업무분장은 “별표3”과 같다.

<본조 2005.10.21><개정 2007.1.10, 2007.10.1, 2008.1.3, 2009.1.1, 2009.8.1, 2009.11.1, 2011.3.1, 2011.7.18, 2011.12.14, 2012.4.10, 2012.12.27, 2013.12.17, 2014.4.1, 2014.10.30, 2014.12.26, 2015.6.10, 2015.7.31>

제4장 보칙

제16조(위원회) ① 공단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전문연구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005.10.21 호수변경>

② 제1항의 위원회 및 전문연구 기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7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005.10.21 호수변경>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5.4.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5.7.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5.1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 주차안내원은 '86.1.1부터 시행한다.

부 칙(85.12.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7.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7.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올림픽대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업무 인수에 따른 업무와 정원은 건행 30050-1303(1987.10.5)에 의거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9.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1.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0.3.7)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6.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9.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2.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8.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5.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2 정원표중 한강시민공원(여의도지구) 주차장사업 인수에 따른 증원은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시, 남부순환도로 감축인원은 서울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 공포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7. 3)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4.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4.6.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설관리과 및 비상계획과의 증원되는 정원 19명(기술직 2급 1명, 기술직 4급 1명, 기술직 5급 1명, 기술직 6급 1명, 기능직 1등급 4명, 기능직 2등급 10명, 기능직 3등급 1명)은 199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4.1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다른 규정의 내용 중 “안내원”은 “관리원”으로 본다.

부 칙(‘95.8.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강거북선과 올림픽대로 손궤원인자 부담금 징수 직제는 1995년 12월31일 폐지한다.

②(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직명, 기구명, 용어가 변경되는 다른 규정의 개정은 본 규정 개정으로 갈음한다.

③(보수규정의 개정)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중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96.7.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97.1.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설관리처에 증원되는 59명(사무직 4급5, 사무직 5급5, 업무직 6급13, 업무직 7급 13, 업무직 8급13, 업무직 9급5)은 각 상가 인수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7.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직명, 기구명, 용어가 변경되는 다른 규정의 개정은 본 규정 개정으로 갈음한다.

부 칙(1998. 1. 6)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2.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기획134-1092호(‘97.12.23)”에 의해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직명, 기구명, 용어가 변경되는 다른 규정의 개정은 본 규정 개정으로 갈음한다.

부 칙(1998. 8.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청평화상가 및 여미지식물원 관리에 필요한 정원(별정직 1급 또는 2급 1명, 별정직 3급 2명, 별정직 4급이하 77명, 총80명)은 여미지식물원 매각시까지, 청평화상가의 관리에 필요한 정원(별정직 4급 이하 11명)은 청평화상가 매각시까지, 장묘시설확충에 필요한 정원(사무직 2급 또는 3급 1명, 사무직 4급 이하 2명, 기술직 4급이하 3명, 업무직 1명, 총7명)은 제2화장장 준공시까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여미지관리사업소에 대한 경과 규정) 여미지식물원 매각시까지는 여미지식물원 관리를 위해 여미지관리 사업소를 한시기구로 두고 여미지관리사업소에 운영팀과 관리팀을 둔다. 여미지관리사업소는 시설관리이사의 관할하에 둔다

④(장묘시설확충 업무에 관한 경과규정) 제2화장장 건립 및 장묘시설확충업무추진을 위해 장묘시설확충전담팀을 제2화장장 건립시까지 한시기구로 둔다. 장묘시설확충전담팀은 총무이사 관할하에 둔다.

⑤(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기구명, 직위명, 용어에 대해서는 본 규정 개정으로 갈음한다.

부 칙(1999. 4.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청평화상가 및 여미지식물원 관리에 필요한 정원(별정직 1급 또는 2급 1명, 별정직 3급 2명, 별정직 4급이하 74명, 총77명)은 여미지식물원 매각시까지, 청평화상가의 관리에 필요한 정원(별정직 4급 이하 11명)은 청평화상가 매각시까지, 장묘시설확충에 필요한 정원(사무직 2급 또는 3급 1명, 사무직 4급 이하 2명, 기술직 4급이하 3명, 업무직 1명, 총7명)은 제2화장장 준공시까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6.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19)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11.28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폐지) 청평화상가 매각에 따라 청평화상가 관리에 필요한 정원 (별정직 4급이하 11명)은 감원한다.

부 칙(2001.3.15)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조정) 추모공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장묘시설 확충에 필요한 정원 총15명(일반직 사무직렬 1급1, 2급2, 4급이하 8, 일반직 시설직렬 3급1, 시설, 설비, 농림직렬 4급이하 3명)은 제2화장장 준공시까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1.3.24)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12)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6.19)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조정)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원(사무직 3급 1명, 4급이하 12명, 설비 직 2급 1명, 4급이하 11명, 특수직 1급 1명, 4급이하 6명 등 총 32명)은 교통관리센터가 정규조직으로 개편시까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1.9.5)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9.6)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6)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8)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 23)

-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화물조업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정원(사무직 3급1명, 4급이하 35명, 총36명)의 감원은 해당시설의 민간위탁개시일부터 시행하며, 남산권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원(설비직 4급이하 1명, 특수직 4급이하 2명, 총3명), 강동권역 공영차고지 관리에 필요한 정원(사무직 4급이하 2명, 설비직 4급이하 3명, 총5명),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원(특수직 4급 이하 1명)은 해당시설의 운영개시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조정)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원(특수직 4급이하 1명)은 교통관리센터가

정규조직으로 개편시까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7. 29)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지원업무 관리에 필요한 정원(사무직 3급 1명, 4급이하 3명, 조사직 100명 등 총 104명)은 해당업무의 운영개시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15)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31)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조정) 지하도상가 관리에 필요한 정원(4급이하 8명)은 추가 민간위탁시까지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3. 18)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수도소규모공사감독 기구 및 정원의 운영은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규정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6. 10)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13)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7)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독립사업소는 시장이 지정한 소장이 임명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규정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8.26)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직위별 보임직급 기준은 이 규정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총무이사, 시설관리이사, 기술이사)가 행한 행위 또는 기타 상임이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정에 의한 본부장(경영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기술본부장)이 행한 행위 또는 본부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소장) 및 부소장(관리처장)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정원의 조정) 교통운영처의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원(사무직 4급이하 12명, 설비직 4급이하 11명, 특수직 4급이하 6명 등 총 29명)은 교통관리센터가 정규조직으로 개편시까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규정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미지식물원에 대한 경과규정) 제6조(이사)의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관장 및 제18조(경영지원처)의 직무분장은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소유권 이전후 고용인력정리 및 사업비정산, 제세공과금납부 등 제반 후속조치 완료시까지는 현재와 같이 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규정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8.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21)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③(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규정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3.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청계천문화관 폐지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1.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직명, 기구명, 용어가 변경되는 다른 규정의 개정은 본 규정 개정으로 갈음한다.

부 칙(2010. 3. 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규정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3.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에 의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의 '처(실·사업단)'는 '처(실·원·장)'로, '상가 사업단'은 '상가운영처'로, '월드컵경기장사업단'은 '체육시설운영처'로, '어린이대공원사업단'은 '서울어린이 대공원'으로, '장묘문화사업단'은 '추모시설운영처'로 '장애인아동지원처'는 '장애인콜택시운영처'로, '총무회계처'는 '총무처'로, '인사노무처'는 '인사처'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7.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본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규정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2.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6.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규정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3.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다른 규정이나 내규의 개정은 이 규정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7.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규정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26)(정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7.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직제규정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명을 “인재개발원”에서 “인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인재개발원장”을 각각 “인재원장”으로 한다.

②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VI.인재개발원”을 “VI.인재원”으로 하고, “5.인재개발원 시설운영”을 “인재원 시설운영”으로 한다.

③ 직원학위취득지원관리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중 “인재개발원”을 각각 “인재원”으로 한다.

④ 공무직직원관리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인재개발원”을 “인재원”으로 한다.

⑤ 공무국외여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3호, 제7조 제3항, 제8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제22조 제1항 중 “인재개발원장”을 각각 “인재원장”으로 하며, 별표1 중 “인재개발원”을 “인재원”으로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인재개발원”을 “인재원”으로 한다.

⑦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인재개발원”을 “인재원”으로 한다.

부 칙(2019.4.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제14조,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인사처”를 “인사노무처”로 하고, “안전관리처”를 “안전처”로 한다.

②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중 “인사처장”을 “인사노무처장”으로 한다.

③ 계약직직원운영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인사처”를 “인사노무처”로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안전관리처장”을 “안전처장”으로 하고, “인사처”를 “인사노무처”, “안전관리처”를 “안전처”로 한다.

⑤ 당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안전관리처장”을 “안전처장”으로 한다.

⑥ 보안업무규정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인사처장”을 “인사노무처장”으로 한다.

부 칙(2019.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별표1-1 중 “조무”를 “실무”로 한다.

② 보수규정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나목, 같은 조 제3호 나목 중 “조무”를 “실무”로 한다.

부 칙(2022.4.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직제규정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명을 “인재원”에서 “인재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인재원장”을 각각 “인재문화원장”으로 한다.

②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VII.인재원”을 “VII.인재문화원”으로 하고, VII. 제5호 제목 중 “인재원”을 “인재문화원”으로 한다.

③ 직원학위취득지원관리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중 “인재원”을 각각 “인재문화원”으로 한다.

④ 공무국외연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3호, 제7조 제4항, 제8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제22조 제1항 중 “인재원장”을 각각 “인재문화원장”으로 하며, 별표1 중 “인재원”을 “인재문화원”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23.4.10.>

기 구 표

이 사 장

■ 6본부 28처(실·원·장)



<별표 2> <개정 2023.4.10.>

정 원 표

【총 정원 : 3,897명】

(단위 : 명)

| 구 분 | 계 | 임원 | 일 반 직 | | | |
|-----|-------|----|-------|----|----|-------|
| | | | 소계 | 1급 | 2급 | 3급 이하 |
| 정 원 | 3,897 | 6 | 3,891 | 26 | 45 | 3,820 |

※ 노동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별도

※ 부서별 정원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책임하에 적의배분 시행

<별표 3> (제15조 관련) <개정 2023.4.10.>

업무분장

| 부서별 | 업무분장내용 |
|-------|--|
| 감사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 및 업무의 감사 2. 사정업무 및 외부감사 관련업무 총괄 3. 이사장 특명사항 처리 4. 민원업무 총괄 5.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
| 기획조정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 수립 및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조정 2. 경영목표 설정 및 주요사업 시행계획 수립·조정 3. 조직 및 정원관리 4. 예산편성 배정 및 조정, 예산집행계획 수립·시행 및 실적분석 5. 지시사항 총괄 및 국회, 시의회 관련업무 총괄 6. 송무 및 제규정 제·개정 등 관련업무 총괄 7. 내·외부 경영평가 업무 총괄 8. 제안제도 및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9. 고객서비스현장 운영 등 고객만족경영 관련업무 총괄 10. 경영혁신 기법의 도입 등 경영혁신 관련업무 총괄 11.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내·외부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13. 마케팅 전략, 실행지원 등 마케팅 관련사항 |
| 인사노무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원의 채용, 선발, 배치 등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총괄 2. 근태·복무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3. 급여 및 소득정산 등 세무에 관한 사항 4. 노사협의회 및 단체협상에 관한 업무 총괄 5. 의료·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 총괄 6. 주택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 업무 일체 7. 근로자 고충처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임직원 복지후생에 관한 업무 총괄 9. 구내식당 운영 등 상조회 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
| 총무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실(비서업무 포함)에 관한 사항 2. 대내외 행사 주관 및 문서·직인관리 3. 공단 차량관리 및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4. <삭제> 5. 예산의 집행, 결산 및 자금운영 및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운영 6.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관한 업무 총괄 7. 임대료, 관리비, 광고료 및 기타 수입금의 관리 8. 직장 민방위대 및 예비군 운영 등 비상계획 업무 총괄 9. 청사 및 부대시설관리 및 임대·경비·보안·당직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계약관련 기준정립, 수입계약 공고 및 낙찰자 선정 관련 업무 14.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15. 공사·용역 등에 대한 기술 및 계약심사, 설계변경 심의사항 의결 16. 기타 타부서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홍보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언론홍보자료 작성, 市 기자실 관련업무, 신문방송 모니터 및 자료분석 2. 시민소통 매체(블로그,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 운영전반 3. 디자인, 홍보 간행물 발간 및 조정, 홍보계획 수립·시행 |

| 부서별 | 업무분장내용 |
|-------------|---|
| 인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계획 수립, 과정 기획·개발 및 설계, 교육 관련 업무 총괄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연수, 법정교육 등 포함) 3. 인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조직문화 개선 업무 총괄 |
| IT전략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산 및 정보화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장단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실행 3. 스마트데이터센터 구축 4. 빅데이터 수집/분석 환경 구축 등 5.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지털 사업 업무 |
| 상가운영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도상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하도상가 인수에 관한 사항 3. 상가관리소 지도, 감독 업무 4. 광고 등 부대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상가시설물, 장비의 교체 등 상가의 개보수에 관한 사항 6. 지하도 상가내 보도 환경, 위생,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7. 지하보도 재해, 안전예방, 질서유지 관한 사항 8.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임대 및 시설관리업무 총괄 |
| 추모시설운영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모시설운영처 화장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추모시설운영처 시설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3. 장재장, 납골당 및 묘지공원의 전반적인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립묘지 일제 정비에 관한 사항 일체 5. 추모시설운영처 진입터널 등 진입도로 유지관리 업무 6. 사용료, 관리비,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7. 삭제 |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콜택시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2.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콜택시 차량 구매 · 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월드컵경기장 및 장충체육관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관련 업무 2. 서울월드컵경기장 및 장충체육관 각종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종 행사유치 및 시설운영 관련 업무 4. 수목 및 잔디관리 등 조경관련 업무 |
| 돔경기장운영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돔경기장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관련 업무 2. 돔경기장 각종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종 행사유치 및 시설운영 관련 업무 4. 그라운드 및 수목 등 조경관련 업무 |
| 서울어린이대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어린이대공원 각종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원내 위탁 및 점용허가, 사용료징수 등 관련업무 일체 3. 동물사 안전관리, 동물사육, 증식 및 전시에 관한 사항 4.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5. 삭제 |

| 부서별 | 업무분장내용 |
|------------|--|
| 청계천 관리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계천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2. 청계천 토목, 기전,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3. 청계천상황실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4. 청계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관리 5. 청계천 청소 · 경비 및 자원봉사자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6. 청계광장의 각종 문화행사 유치 및 허가업무 7. 청계천 문화 · 디지털사업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
| 도로 관리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전용도로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2. 자동차전용도로 도로부속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업무 3. 유지보수 장비수급 및 관리 4.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순찰대 운영 5. 자동차전용도로 손괴원인조사 및 보수비용 산정 등 관련업무 6. 자동차전용도로 수방관련에 관한 업무 7. 자동차전용도로 포장관련 업무 |
| 도로 시설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2.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업무 3.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내진보강 관련 업무 4. 자동차전용도로 안전성 및 관리효율성 제고를 위한 첨단기술 적용 업무 5. 자동차전용도로 분야 대내외 기술공유 및 지원 업무 |
| 도로 기전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전용도로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2. 자동차전용도로 기전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업무 3. 자동차전용도로 기전시설 보수·보강 및 내진보강 관련 업무 |
| 도로 환경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녹지관리에 관한 업무 2. 청소장비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일체 3. 자동차전용도로 제설관련 업무 총괄 |
| 교통 정보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운영 업무 2. 교통상황 감시 및 시스템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3. 교통방송 정보제공 관련 업무 4. 교통관리센터, 현장 및 통신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통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공사감독 1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감독업무의 조직, 인력, 교육 및 예산관련 업무 총괄 2. 공사감독업무 대행 협약 관련 업무 3. 안전점검 등 각종 점검 및 기술지도에 관한 업무 4.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5. 토목 관련 공사감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6. 시설안전본부장 산하 다른처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7. 기타 시설안전부장이 지시하는 업무 |

| 부서별 | 업무분장내용 |
|--------------|--|
| 공사감독 2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목 관련 공사감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상수도관련 소관 공사감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설안전본부장이 지시하는 업무 |
| 공사감독 3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경관련 소관 공사감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전기 및 기계관련 소관 공사감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설안전본부장이 지시하는 업무 |
| 공동구 관리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구 구조물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2. 공동구 중장기 구조물 관리계획 수립 시행 3. 공동구 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공동구내 전기, 기계 등 부대시설 관리업무 5. 공동구 안전 및 보완관리계획 수립 시행 6. 공동구내 방재, 보안 및 소방시설 관리업무 7. 공동구내 출입자 통제 및 일상순찰 업무 8. 공동구내 수용시설 공사승인 관련업무 |
| 상수도 지원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등 송달에 관한 업무 2. 수도 계량기 교체에 관한 업무 3. 기타 수도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에 부수되는 업무 |
| 주차시설 운영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영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점포시설 제외) 2. 공영주차장 중 주차장 분포가 높은 주차장 시설물관리(점포시설 면적 5,000㎡미만) 3. 민간위탁주차장 수탁자 선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 교통시설 운영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영주차장 점포시설 운영 업무 2. 공영주차장 중 점포시설 분포가 높은 주차장 시설물 관리(점포시설 면적 5,000㎡이상) 3. 혼잡통행료 징수에 관한 업무 4.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원 업무 |
| 공공자전거 운영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자전거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공공자전거 수입금 관리 및 정산 업무 4. 공공자전거 홍보, 문화행사 기획 및 민간협업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콜센터 운영 관리 업무 6. 자전거대여소 구축 및 시설물 유지관리 7. 공공자전거 수리, 정비, 배송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공자전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 안전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사고 및 재해대책 업무 총괄 2. 안전 모의훈련 및 안전사고·재난 대응 총괄·조정 3.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업무(작업환경,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지원 포함) |